

[별표]<개정 1971·8·5, 1982·8·7>

수수료액

납부의무자	수수료의 액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3천원
2. 법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신청하는 자	·손실보상의 예정액이 5만원 미만인 때에는 보상예정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인 때에는 1천 5백원에 보상예정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 금액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인 때에는 2천원에 보상예정액의 1천분의 4를 가산한 금액 ·50만원이상 1백 만원미만인 때에는 4천원에 보상예정액의 1천분의 2를 가산한 금액 ·1백 만원이상인 때에는 8천원
3.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는 자	제2호의 준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자	제2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